기업가센터 규정 중 개정 규정

1.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

- 기업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함 (제7조제2항)

변경 전	변경 후
센터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인재개발원장, 창업지원단장, 연계전공 교원 2명	센터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인재개발원장,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

2. 개정 규정

기업가센터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인재개발원장, 창업지원단장, 연계전공 교원 2명”을 “산학협력단장, 인재개발원장,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”으로 한다.

부칙(2023. 5. 12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기업가센터 규정 중 개정 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	신	개정사유및내용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가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7조(운영위원회) ① ……	
② 위원회는 센터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인재개발원장, 창업지원단장, 연계전공 교원 2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	② ……산학협력단장, 인재개발원장,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……	*위원 구성 변경 반영
③~④ (생략)	③~④ (현행과 같음)	
	부칙(2023. 5. 12.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